

「2026년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」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통합공고

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년 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「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일

(사)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이사장

1 사업 개요

- ☐ 사업명 : 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
- ☐ 사업목적 : 청년 창업과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청년 정착과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☐ 지원규모 : 총 32개社(팀) 정도

유형	지원규모		지원한도
①유형) 예비창업	5개社 정도		1개社당 최대 2,000만원
②유형) 기창업	22개社 정도		
③유형) 협업프로젝트	5개(팀) 정도	3개팀 정도	프로젝트당 최대 3,000만원
④유형) 로컬브랜드		2개 정도	브랜드당 최대 3,000만원*

* ④유형의 경우 1개社 참여 시 최대 2천만원, 2개社 이상 참여시 최대 3천만원 지원

※ 자부담금 5% 이상 필수(부가세 제외,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신청자가 부담)

※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
- ☐ 지원기간 : 2027년 1월 ~ 2027년 11월 (11개월)

- ☐ 지원대상

유형	지원대상
①유형) 예비창업	대구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(팀)
②유형) 기창업	대구 남구 소재 기업으로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
③유형) 협업프로젝트	대구 남구 소재 기업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프로젝트 팀
④유형) 로컬브랜드	대구 남구 로컬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남구 소재 기업(팀)

※ 세부 자격요건은 2. 신청자격 확인

□ 지원내용

- (①-②유형) 사업화 지원금(시제품 제작비, 임차료 등) 최대 2,000만원
- (③유형) 공동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비(시제품 제작비 등) 최대 3,000만원
- (④유형) 로컬브랜드 개발비(시제품 제작비 등) 최대 3,000만원

※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남구 외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2 신청 자격

□ 신청 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기업)

유형	신청자격
①유형) 예비창업	① 2026. 10. 2. 기준 39세 이하 청년(팀창업인 경우 팀원 모두 청년) ② 대구광역시 남구를 <u>본사 소재지</u> 로 하는 창업 예정자 또는 팀 ※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※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사업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②유형) 기창업	① 2026. 10. 2. 기준 대구광역시 남구를 <u>본사 소재지</u> 로 하는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※ 개인 : 개업연월일 기준 / 법인 : 법인성립연월일 기준 ※ 단, 문화/예술/관광 분야일 경우 10년 이내 ② 청년(채용일 기준 39세 이하)을 1명 이상 채용 예정인 기업 ※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함 ※ 채용 청년이 퇴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대체 채용하여야 하며, 미채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
③유형) 협업 프로젝트	① 2026. 10. 2. 기준 대구광역시 남구를 <u>본사 소재지</u> 로 하는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협업프로젝트팀 ② 협업기업 중 1개사 이상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- 대표자가 2026. 10. 12. 기준 39세 이하 - 2026. 10. 2. 기준 창업 7년 이내 ③ 지원기간 내 <u>공동상품 또는 서비스</u> 1건 이상 개발 가능한 팀 ※ 대표기업을 지정하여 협약·지원금 정산 등 사업 수행
④유형) 로컬 브랜드	① 2026. 10. 2. 기준 대구광역시 남구를 <u>본사 소재지</u> 로 하는 기업 ② 신청기업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(단, 공동 신청하는 경우 1개사 이상이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) - 대표자가 2026. 10. 2. 기준 39세 이하 - 2026. 10. 2. 기준 창업 7년 이내 ③ 지원기간 내 남구 지역자원과 연계한 <u>로컬브랜드</u> 개발(고도화) 가능 한 기업 또는 소상공인 ※ 공동브랜드 및 협업형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 ※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, 대표기업을 지정하여 협약·지원금 정산 등 사업 수행

※ [별첨1] 로컬브랜드 유형 및 [별첨2] 참여 제한 대상 업종 참조

□ 참여 제외 대상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- 타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,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, 보조금 수급 등의 제한을 받은 자
- (①유형) 재직 청년(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)
- (②-④유형) 신청기업이 휴·폐업 중인 경우
- (②-④유형)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자
- (②-④유형)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자
 - ※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, 미가입 사업장임을 증빙하여야 함(캡처본)
- 사업장 소재지(예정지 포함)가 공유오피스(상주여부 무관) 또는 자택인 자
- 기타 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3 지원 내용

□ 지원기간 : 2027년 1월 ~ 2027년 11월 (11개월)

□ 지원조건

- ①유형) 예비창업 :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남구 사업자등록 완료
- ②유형) 기창업 :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 신규 채용 완료
- ③유형) 협업프로젝트 : 지원기간 내 공동상품 또는 서비스 1건 이상 개발 완료
- ④유형) 로컬브랜드 : 지원기간 내 남구 지역자원과 연계한 로컬브랜드 1건 이상 개발 완료

※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

※ ②유형의 경우 협약 기간 동안 채용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, 채용 청년이 퇴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대체 채용하여야 함

□ 지원내용

○ (①-②유형) 사업화 자금 1개社당 2,000만원 및 1:1 맞춤 컨설팅 지원

지원내용	세부내용		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- 사업화 자금 : 1개社 당 최대 2,000만원, 자부담금 5% 이상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비목</th><th>비목 정의</th></tr><tr><td>재료비</td><td>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</td></tr><tr><td>외주 용역비</td><td>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</td></tr><tr><td>임차비</td><td>- 공간 임차비용 : 사무실 또는 매장 임차비 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</td></tr><tr><td>무형자산 취득비</td><td>- 사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</td></tr><tr><td>지급 수수료</td><td>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</td></tr><tr><td>교육 훈련비</td><td>-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 또는 경영 관련 교육 이수 비용</td></tr><tr><td>광고 선전비</td><td>- 사업아이템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</td></tr></table>	비목	비목 정의	재료비	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	외주 용역비	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	임차비	- 공간 임차비용 : 사무실 또는 매장 임차비 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	무형자산 취득비	- 사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지급 수수료	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	교육 훈련비	-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 또는 경영 관련 교육 이수 비용	광고 선전비	- 사업아이템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
	비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		
	재료비	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															
	외주 용역비	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															
	임차비	- 공간 임차비용 : 사무실 또는 매장 임차비 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															
	무형자산 취득비	- 사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														
	지급 수수료	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															
	교육 훈련비	-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 또는 경영 관련 교육 이수 비용															
	광고 선전비	- 사업아이템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															
※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 지원 불가																	
※ 임차비(공간+장비) 한도 월 40만원 이내(자부담 20% 필수)																	
- 예) 공간임차비 30만원, 장비임차비 10만원 신청 → 가능																	
※ 사업화 자금의 2,000만원의 총 5% (100만원) 자부담금 필요																	
예1) 임차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																	
- 외주용역비 2,000만원, 자부담금 100만원																	
예2) 임차비를 신청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
- 외주용역비 1,600만원, 자부담 20만원																	
임차비 400만원, 자부담금 80만원(20% 자부담)																	
1:1 컨설팅	창업자의 사업 내용에 맞는 1:1 맞춤형 멘토 또는 컨설팅 제공																
네트워킹	사업관계자 및 주변 상인들과의 네트워킹 제공																

※ 지원기간 후 1년 이내 남구 외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○ (㉓유형) 공동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비 프로젝트당 3,000만원

지원내용	세부내용														
공동 상품(서비스) 개발비	- 공동상품 개발비 : 프로젝트당 최대 3,000만원, 자부담금 5% 이상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비목</th><th>비목 정의</th></tr><tr><td>재료비</td><td>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</td></tr><tr><td>외주 용역비</td><td>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</td></tr><tr><td>임차비</td><td>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</td></tr><tr><td>무형자산 취득비</td><td>- 프로젝트 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</td></tr><tr><td>지급 수수료</td><td>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</td></tr><tr><td>광고 선전비</td><td>- 프로젝트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</td></tr></table>	비목	비목 정의	재료비	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	외주 용역비	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	임차비	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	무형자산 취득비	- 프로젝트 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지급 수수료	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	광고 선전비	- 프로젝트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
	비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
	재료비	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													
	외주 용역비	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													
	임차비	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													
	무형자산 취득비	- 프로젝트 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												
	지급 수수료	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													
	광고 선전비	- 프로젝트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													
	※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 지원 불가														
※ 임차비 한도 월 40만원 이내(자부담 20% 필수)															
※ 개발비의 3,000만원의 총 5% (150만원) 자부담금 필요															
예1) 임차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															
- 외주용역비 3,000만원, 자부담금 150만원															
예2) 임차비를 신청하는 경우															
- 외주용역비 2,600만원, 자부담 62만원															
임차비 440만원, 자부담금 88만원(20% 자부담)															
네트워킹	사업관계자 및 주변 상인들과의 네트워킹 제공				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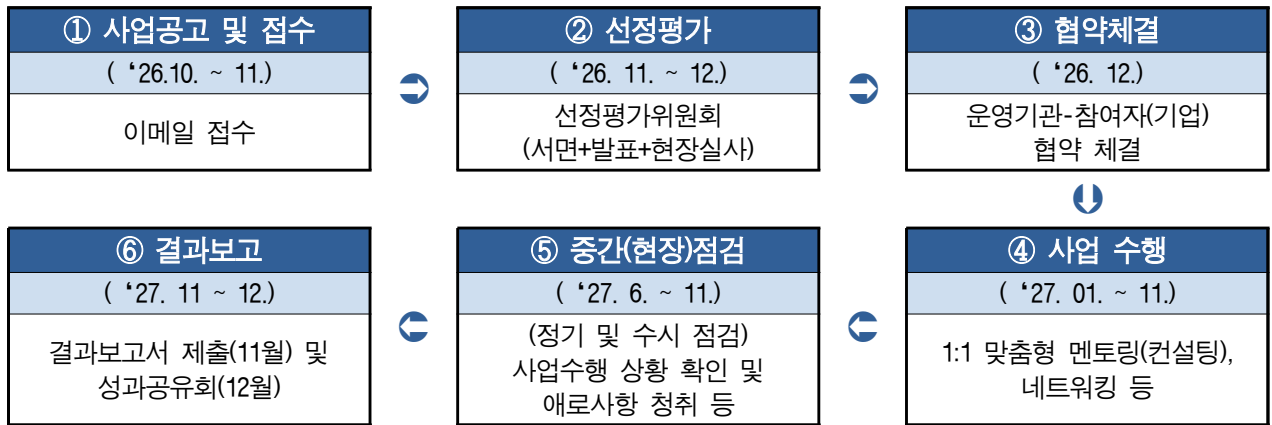
※ 지원기간 후 1년 이내 남구 외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○ (④유형) 로컬브랜드 개발비 브랜드당 최대 3,000만원

지원내용	세부내용														
공동 상품(서비스) 개발비	- 로컬브랜드 개발비 : 브랜드당 최대 3,000만원*, 자부담금 5% 이상 ※ 1개社 참여 : 최대 2,000만원, 2개社 이상 참여 : 최대 3,000만원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비목</th><th>비목 정의</th></tr><tr><td>재료비</td><td>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</td></tr><tr><td>외주 용역비</td><td>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</td></tr><tr><td>임차비</td><td>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</td></tr><tr><td>무형자산 취득비</td><td>- 로컬브랜드와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</td></tr><tr><td>지급 수수료</td><td>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</td></tr><tr><td>광고 선전비</td><td>- 로컬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</td></tr></table>	비목	비목 정의	재료비	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	외주 용역비	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	임차비	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	무형자산 취득비	- 로컬브랜드와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지급 수수료	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	광고 선전비	- 로컬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
	비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
	재료비	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													
	외주 용역비	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													
	임차비	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													
	무형자산 취득비	- 로컬브랜드와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												
	지급 수수료	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													
	광고 선전비	- 로컬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													
	※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 지원 불가														
※ 임차비 한도 월 40만원 이내(자부담 20% 필수)															
※ 개발비의 3,000만원의 총 5% (150만원) 자부담금 필요															
예1) 임차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															
- 외주용역비 3,000만원, 자부담금 150만원															
예2) 임차비를 신청하는 경우															
- 외주용역비 2,600만원, 자부담 62만원															
임차비 440만원, 자부담금 88만원(20% 자부담)															
네트워킹	사업관계자 및 주변 상인들과의 네트워킹 제공														

※ 지원기간 후 1년 이내 남구 외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□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선정 방법

□ 평가절차 : 총 2단계 평가(서류평가 → 발표평가/현장실사) 진행

유형	평가방법
①유형) 예비창업	① 서류평가 :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 (2배수) ② 발표평가 :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(1배수 + 후보 3) ※ 기간 내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 기회 부여
②유형) 기창업	① 서류평가 :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 (2배수) ② 발표평가 :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(1배수 + 후보 5) ③ 현장실사 : 사업장 실존 여부 확인(발표평가 합격자에 한함) ※ 기간 내 청년 채용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 기회 부여
③유형) 협업 프로젝트	① 서류평가 :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 (2배수) ② 발표평가 :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(1배수 + 후보 1)
④유형) 로컬 브랜드	① 서류평가 :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 (2배수) ② 발표평가 :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(1배수 + 후보 1)

□ **평가방법** : 전문 평가위원회 구성

- (요건검토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요건 검토
- (서류평가)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를
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 - ※ 서류평가 합격자 개별 통보, 동점자 발생 시 모두 발표평가 자격 부여
- (발표평가)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 평가 진행
 - ※ 발표평가는 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 - ※ 평가시간 : 기업별 15분 이내(발표 5분 이내 + 질의응답 10분 이내)
 - ※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(단, 비상상황 발생 시 온라인으로 변경)
- (최종선정)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
 - ※ 선정평가 결과 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
경우, 선정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

□ **평가기준** 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(창업)
동기, 사업화 전략,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

□ **평가일정**

- 서류평가 결과 통보 : 2026. 11. 25.(수)
- 발표자료(PPT) 제출기한 : 2026. 12. 1.(화)
- 발표평가일 : 서류평가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
- 발표평가(최종) 결과 통보 : 2026. 12. 18.(금)
 - ※ 발표자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시
평가대상에서 제외함
 - ※ 각 단계별 합격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, 상기 일정은
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

신청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6. 10. 2.(금) ~ 2026. 11. 12.(목),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hope1953@hanmail.net

- ※ 전자우편 접수 후, 유선(☎ 053-242-1953)으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
미확인 시 접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사업 참여 신청서	【서식 1】
2	확약서	【서식 2】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【서식 3】
4	사업계획서	【서식 4】
5	주민등록등(초)본 (3개월 이내 발급분)	(①유형)
6	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및 총사업자등록내역) ※ 홈택스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☞ 사업자등록 사실 없는 경우 :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☞ 사업자등록 사실 있는 경우 :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	(①유형)
7	(신청일 기준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※ 국민건강보험공단, 정부24 접속 발급	(①유형)
8	(신청일 기준)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※ 지점/분사무소, 지배인/대리인 모두 포함 발급	(②-④유형)
9	(신청일 기준) 사업자등록증명	(②-④유형)
10	사실증명(사업자등록변경내역) ※ 홈택스 접속 → 증명·등록 신청 → 민원 증명 → 사업자등록변경내역 (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: 상호, 사업장 소재지, 업종 모두, 주민등록번호 공개)	(②-④유형)
11	(신청일 기준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국세 : 홈택스 접속 / 지방세 : 정부24 발급	(②-④유형)
12	(신청일 기준) 4대보험 완납증명서 ※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접속	(②-④유형)
13	(신청일 기준)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※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	(②-④유형)
14	최근 2년('24~'25) 표준재무제표 ※ 창업,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	(②-④유형)
15	최근 2년('24~'25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※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(기준일 ① 2024.12.31.~2024.12.31. ② 2025.12.31.~2025.12.31.)	(②-④유형)
16	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	(③-④유형)
17	사업(창업아이템) 관련 수상 및 특허 서류 등	해당 시 제출

※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의 해당 제출서류 제출 필수

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·주소 모두 공개 발급

※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1개의 파일(PDF)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외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6

유의사항

- ☐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, 신청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
- ☐ ①·②유형의 경우, 「2024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」, 「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」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(기업)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
- ☐ 선정자(기업)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, 사업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 해지(취소) 및 지원금 환수, 참여 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
- ☐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, 대표자 변경 시 선정(협약)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☐ 선정자(기업)는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남구 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하며,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남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
- ☐ 본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(기업)는 사업종료 후 5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- ☐ 신청자(기업)는 공고문 및 신청서, 협약서, 동의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(기업)에게 있음

7

문 의

- ☐ 문 의 처 : (사)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
 - 김민지 팀장 ☎ 053-792-1922
 - 박연수 연구원 ☎ 053-242-1953

□ 로컬브랜드란?

- 대구 남구의 자연·문화·관광·역사·상권·생활문화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품·서비스·콘텐츠·공간 등에 반영하여 사업화한 브랜드

□ 로컬브랜드 개발 유형

구 분	내 용
지역가치·콘텐츠형	남구의 역사, 문화, 장소, 생활문화 및 지역 이야기를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담은 상품·서비스·콘텐츠 등 개발 예시) 지역 스토리를 활용한 문화·영상 콘텐츠, 전시·체험 콘텐츠, 관광굿즈 및 문화상품 등
지역상품·제조형	남구의 지역자원이나 지역적 특색을 소재·디자인·스토리 등에 반영하여 차별화된 상품 개발 예시)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식품·음료, 생활제품, 공예품, 관광상품, 지역자원 활용 제조상품 등
지역특화 관광·체험형	남구의 자연·문화·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·체험형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 예시) 지역 투어, 관광코스 연계 프로그램, 문화·자연 체험, 촬영·전시·교육 프로그램 등
거점공간·상권형	남구의 골목상권·특화거리·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브랜드 또는 공간 콘텐츠 개발 예시) 지역 특화공간, 브랜드 매장, 체험·문화공간, 상권·골목 연계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

- ※ 남구의 지역자원과의 연계성과 지역적 특색이 상품·서비스·콘텐츠 또는 브랜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, 단순 홍보·마케팅, 로고·패키지 변경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행사·이벤트·체험·콘텐츠형 사업은 일회성 운영에 그치지 않고, 지원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·활용하거나 상품·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을 갖추어야 함

별첨2**참여 제한 대상 업종**

연번	대상업종	분류코드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프랜차이즈 가맹점, 인터넷 창업, 무점포 창업 등 기타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	-